

(3) 협회의 운영비용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의연금품 모집비용의 충당비율 신설(영 제17조)

- (1) 법률에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의 비율을 모집된 의연금의 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.
- (2)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2퍼센트 이하로,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.8퍼센트 이하로, 모집금액이 1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.6퍼센트 이하로 하는 등 모집금액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차등하여 정함.
- (3)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의 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한도를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
라. 의연금품의 모집·배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신설(영 제19조)

- (1) 법률에서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이 완료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연금품의 모집·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.
- (2)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·내역 또는 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동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.
- (3)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모집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. 〈법제처 제공〉

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**대 통 령    노 무 현 인**

2007년 9 월 6 일

국무총리    한 덕 수

국무위원    이 상 수  
노동부장관

◎대통령령 제20248호

**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**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6조**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”를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으로, “교부하여야”를 “내주어야”로 한다.

①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”란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8조** (외국인 취업교육기관) 법 제1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한국산업인력공단
2.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**제31조** 제2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(송출국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한다)
3.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
4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(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)

**제31조**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·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.

1.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(송출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다)
2.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
3.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
4.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
5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(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)
6.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
7. 제26조제2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◇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**

노동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와 관련된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**◇주요내용**

가.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의 조정(영 제16조)

- (1) 현재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,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이 업무는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되므로 민간이 수행할 경우 산업연수생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송출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- (2)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인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함.
- (3) 근로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대행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나. 노동부장관의 업무 위탁 규정 정비(영 제31조)

- (1) 현재는 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 비영리법인·단체 모두에게 구분 없이 위탁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.
- (2)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중 송출국가와 관련된 사업,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함.
- (3) 위탁 관련 규정의 정비로 민간기관에 의한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〈법제처 제공〉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**대 통 령 노 무 현 인**

2007년 9 월 6 일

국무총리 한 덕 수

국무위원  
행정자치부 박 명 재  
장 관

◎대통령령 제20249호